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명 : 스마트 복합 센서형 쉼터 추가 구축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주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복합 센서형 쉼터 추가 구축 사업임

○ 스마트 복합 센서형 쉼터의 추가 제작·설치 및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연내 본 사업 수행 완료 및 예산 집행(정산)을 위해서는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기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간 등의 사업자 선정 기간 단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원활한 일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므로 본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2026. 9.

주식회사 센코 대표이사 하 승철